

공 고

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10 - 51 호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
2010. 02. 12.

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시점 - 조원동 468-39번지, 종점 - 조원동 468-39번지
3. 도로길이 : 9.6 m
4. 도 로 폭 : 3.0 m
5. 도로면적 : 6.0 m² (도로후퇴폭 약 0 ~ 1.0m)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68-39번지상의 신축신고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(단위 : m²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 고
조원동	468-39	대	183.0	6.0	-	김윤선	
합 계			171.0	3.0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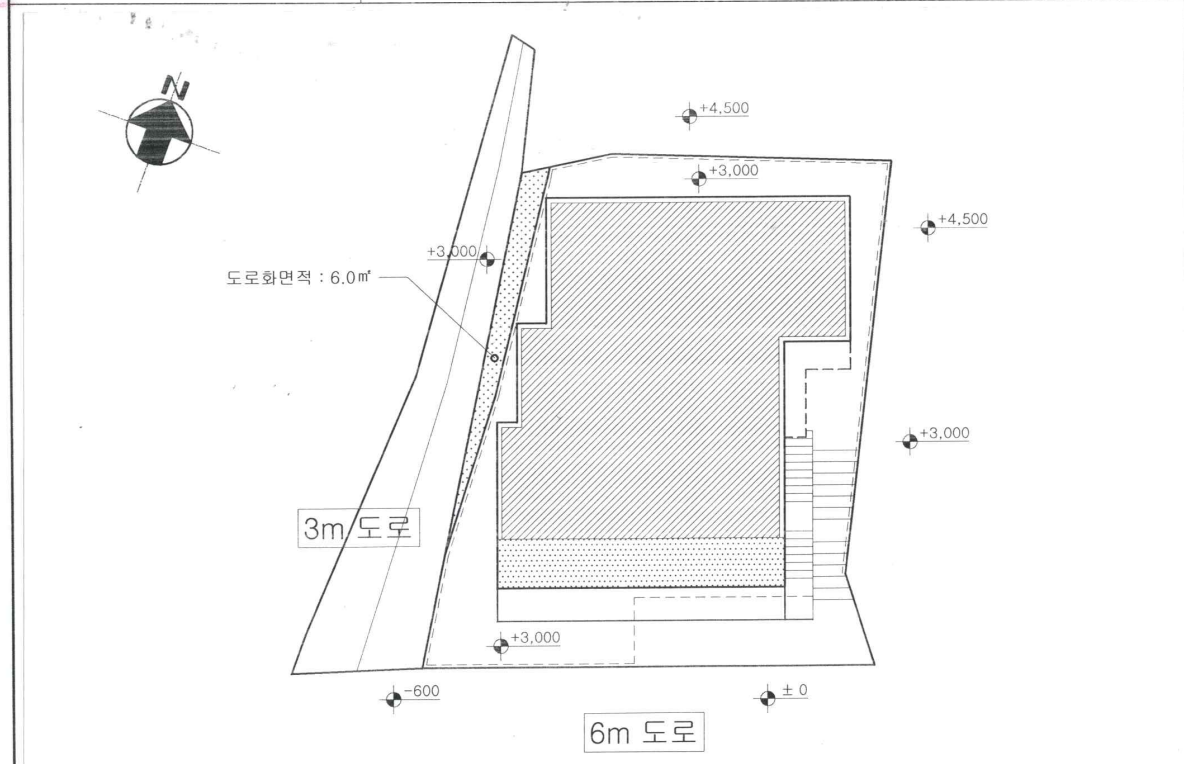
9. 기타사항

위 도로의 면적, 길이, 폭은 개략치 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(031-228-5458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 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·성명	시설7급 손대경	전화 번호	228-5458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

현 황 도 축척 : □ 1/200, □ 1/400, □ 1/600, □ 1/1200



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

30304-26822대
'98.12.28 제정승인

210mm×297mm
(보존용지(2중)70g/㎡)